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70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706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172568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 종결 2017. 5. 24

판결 선고 2017. 6. 14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1725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두산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7. 5. 19. 접수 제32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은 1996. 7. 16.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두산(변경되거나 합 병전 상호 두산농산 주식회사)과, 분할·합병 전 포항시 북구 E 29,751㎡, F 5,950㎡, G 76,857㎡, H 28,959㎡, I 1,111㎡, J 1,482㎡를 1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두산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AG가 주도적으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C, D은 위 각 토지 중 위 E 29,751㎡, F 5,950㎡, G 76,857㎡, H 28,959㎡(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2지분을 피고와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주식회사 두산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와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7. 5. 19. 접수 제32401호로 1997. 4. 29. 자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현재 지분은 8,205/42,810이다.

라. 분할·합병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포항시 북구 N 임야 5,875㎡, Q 임야 4,664㎡, X 임야 2,389㎡, AD 임야 507㎡, AF 임야 548㎡ 등으로 분할·합병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4호증(확인서)의

피고 인영 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 이상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인서가 피고의 배우자가 임의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4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정하고 있는바,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과 합의 아래 그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여전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6637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피고, C, D은 매도인인 주식회사 두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피고, C, D 등의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적어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와 C의 실제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은 전 소유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원인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전 소유자에게 그 원인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위 2012다46637판결 참조), 원고가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두산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두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명의신탁지분에 해당하는 8,205/42,81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판사 한기수판사 강 건

별지